

(가칭)송현문화공원에 세종공원 명칭병기에 관한 청원 검 토 보 고

청 원 번호	29
-----------	----

2025. 6. 17.
주택공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1. 경과

- 청 원 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6 최홍식 외 19명
- 소개의원 : 이병운 의원(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
- 접수일자 : 2025. 5. 26.
- 회부일자 : 2025. 5. 27.

2. 청원요지

- (사)세종대왕기념사업회는 1956년 10월 9일 한글날 설립된 문화기관으로 우리의 성군이신 세종대왕의 성덕과 위업을 추모하여 이를 길이 보존 선양하고 겨레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그간 세종대왕기념관 건립(73. 개관), 세종대왕 기념탑 건립, 한글날 및 세종날 기념 행사 주관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음.
- 지난 2024년 5월 행정안전부에서는 ‘세종대왕 나신 날(5월 15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도 했으며, 이에 온 국민과 기념하기 위한 방안을 건의드립니다.

- 현재 종로구 송현동 48-9 일대에 임시 개방되어 열린송현 녹지광장으로 운영 중인 공간이 앞으로 “송현 문화공원 및 주차장”으로 조성 예정임에 따라 공원 개장 시 공원 명칭에 “세종공원”의 추가 병기를 간곡히 요청 드리는 바, “세종공원”이 추가 병기된다면 시민들에게 세종대왕의 정신을 현대사회에 적용할 것으로 보여지며, 서울시의 위상 또한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여져 이에 동 청원을 요청함.

3. 소개의원 청원소개 요지

- 본 청원은 (가칭)송현문화공원에 세종대왕의 성덕과 위업의 계승, 발전을 통한 국가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세종공원” 명칭병기를 촉구하는 요청임.
- 청원인인 (사)세종대왕기념사업회는 세종대왕의 성덕과 위업을 기리기 위한 목적으로 1956년 10월 9일 한글날에 온 국민과 정부의 염원에 의해 설립된 68년의 역사를 지닌 기관으로서 역사적 과업을 수행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
- 청원인은 지난 2024년 5월 행정안전부에서 ‘세종대왕 나신 날’이 국가 기념일로 지정됨에 따라 온 국민과 함께 이를 축하하고 기념하고자 종로구 송현동 48-9 일대에 조성되어 임시개방 중인 열린송현 녹지광장이 앞으로 “송현 문화공원 및 주차장”으로 조성 예정임에 따라 공원 개장 시 공원 명칭에 “세종공원”의 추가 병기를 요청하고 있음.

- (가칭)송현문화공원에 ‘세종공원’의 명칭 병기는 세종대왕의 정신과 업적을 현대사회에 계승하기 위한 노력임과 동시에 세종대왕의 정신을 현대사회에 적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으므로 매우 의미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동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음.
- 본 청원이 서울특별시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지지가 필요함.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윤은정)

가. 청원 경위 및 주요내용

- 본 청원은 2025년 5월 26일 이병윤 의원(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의 소개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6 최홍식 외 19명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사)세종대왕기념사업회(회장 최홍식)는 세종대왕의 성덕과 위업을 기리기 위한 목적으로 1956년 설립되었으며, 세종대왕의 정신과 업적을 현대사회에 계승·발전시켜 국가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서울시가 조성하고 있는 송현문화공원 개장 시 공원 명칭에 세종공원을 병기하여 줄 것을 요청함.

나. 청원의 취지에 대한 검토

- 세종대왕(조선 4대왕, 재위: 1418년~1450년)은 한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

는 군주로서 집현전을 통해 많은 인재가 양성되었고, 유교정치의 기반이 되는 의례·제도가 정비되었으며, 다양하고 방대한 편찬사업이 이루어졌음. 또한, 농업과 과학기술의 발전, 의약기술과 음악 및 법제의 정리, 공법의 제정, 국토의 확장 등 수많은 사업을 통해 민족국가의 기틀이 공고을 하였음¹⁾.

- 이에 정부도 '24. 11월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고 창조정신과 애민사상을 계승·발전시켜 문화국가로서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매년 5월 15일을 '세종대왕 나신 날'로 지정²⁾하였음.
-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경복궁과 광화문광장에서 '세종대왕 나신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기념 행사를 개최하였음³⁾.

○ 청원인은 세종대왕 정신과 업적을 계승·발전시키고 '세종대왕 나신 날(5월 15일)'의 국가적 위상 강화 등과 연계하여 송현문화공원에 '세종공원' 명칭을 병기하도록 요청하는 것임.

다. 청원의 내용 검토

○ 종로구 송현동 48-9번지 일대에 위치한 송현동 부지는 지난 '21년 서울시-한국토지주택공사-대한항공 3자간 매매·교환방식을 통해 서울시가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여, '열린송현 녹지광장'으로 임시개방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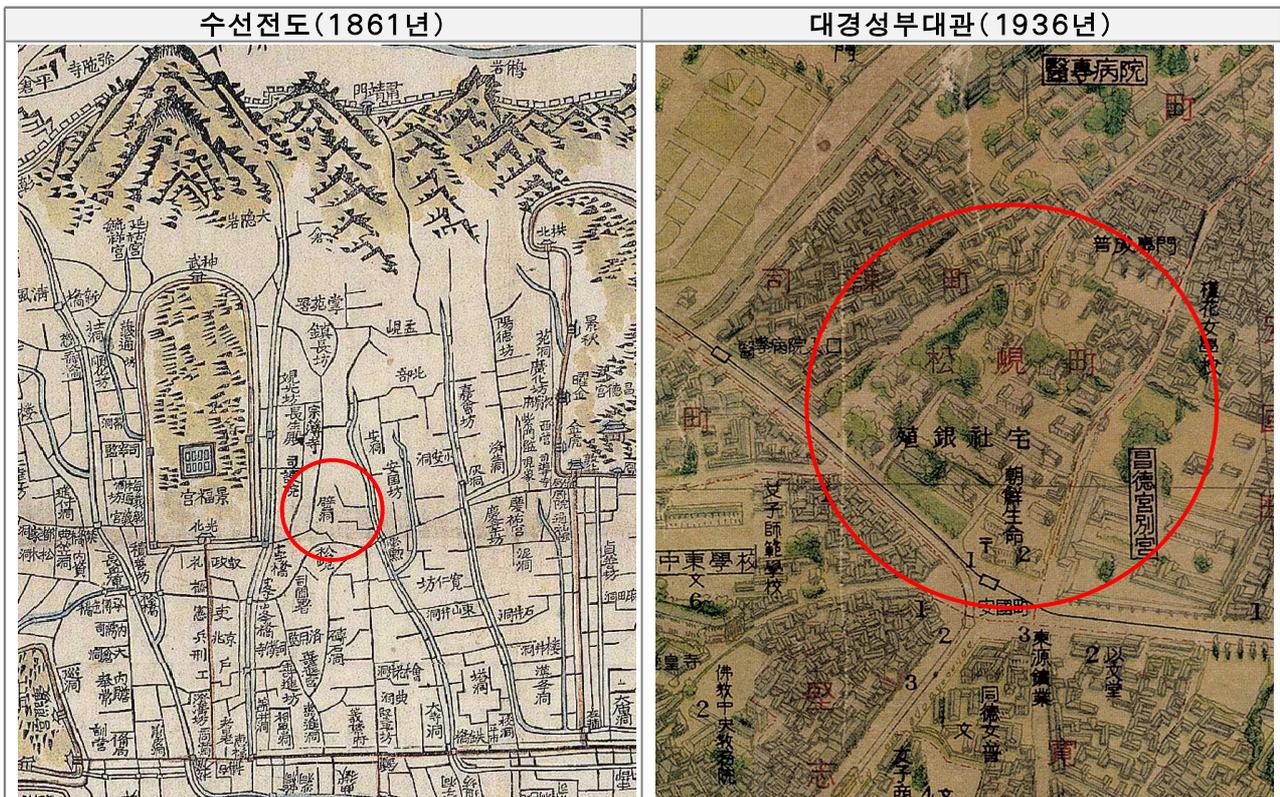
1)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s://encykorea.aks.ac.kr/>)

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11. 26.][대통령령 제35010호, 2024. 11. 26., 일부개정]

3) '628돌 세종대왕 나신 날 기념행사 개최'(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5. 5. 14.)

- 또한 서울시는 해당 부지를 송현문화공원 및 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24년 12월 송현문화공원·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6년 하반기 착공, '2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붙임 3 참조).

○ 송현동 부지는 세종대왕이 재위 기간 대부분을 머물렀던 경복궁 동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송현'이라는 의미는 이름 또한 소나무(松) 숲으로 이뤄진 언덕(峴)이라는 뜻으로 대궐과 가까워 조선시대에는 세도가 및 왕족들의 집터로 쓰였음.



- 또한 송현동 일대는 경복궁을 비롯해 광화문광장, 인사동, 북촌한옥마을, 창덕궁, 창경궁 등 문화재가 집중적으로 입지하고, 이 일대가 주요 관광지로서 전세계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공원의 명칭 또한 역사적 상징성 있는 명칭으로 부여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세종대왕은 경복궁 창건 이후 즉위하여 훈민정음 창제를 비롯, 경제·사회·문화·국방 등 다방면에 걸쳐 업적을 이룬 왕으로, 송현공원에 ‘세종공원’이 병기된다면 세종로, 세종대왕동상 등과 함께 세종대왕의 상징성을 부각하고, 국민의 자긍심 고취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공원의 명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 제2조제9호의2에 따른 지명⁴⁾으로서, 지명 제정은 같은 법 제91조의2⁵⁾에 따라 구(區) 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항에 대해 시(市) 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⁶⁾.

- 따라서, 향후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결정될 송현문화공원의 명칭 또한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른 지명으로서 동일한 절차(종로구 지명위원회→서울시 지명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하여야 할 것임.

4) **인공지명**: 도로의 부속시설물, 댐, 저수지, 다리, **공원**, 주차장, 항만 등과 같이 공공 목적으로 만든 구조물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의2(지명의 결정) ① 시·군·구의 지명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시·도 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6)

기준검토 및 조사 등	→	지명(안) 의견수렴 <공모 or 선호도>	→	제개정안 제출	→	區 지명위원회 심의의결	→	市 지명위원회 심의의결	→	결정사항 통보	→	국토부 고시
-------------	---	------------------------	---	---------	---	--------------	---	--------------	---	---------	---	--------

- 참고로, 소관 부서는 송현공원의 시설 명칭 병기에 관한 사항은 공원의 준공 시점에 최종 결정되므로, 준공을 앞둔 시점(29. 상반기경)에 시민의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명칭 공모 등을 거쳐 시·구 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따라 최종 결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함.

의안심사지원팀장	강대만	02-2180-8204
입법조사관	신아현	02-2180-8216

[붙임1] 관계 법령(p.8)

[붙임2] 서울시 지명 결정 세부 기준(p.12)

[붙임3] 송현문화공원 조성 개요(p.13)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의2. “지명(地名)”이란 산, 하천, 호수 등과 같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地形)이나 교량, 터널, 교차로 등 지물(地物)·지역(地域)에 부여된 이름을 말한다.

제91조(국가지명위원회 등의 설치) ① 지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둔다.

1. 지명의 제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지명 관련 법령, 제도 및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할 지역의 지명의 제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 지명위원회를 두고,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군·구 지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 6. 10.>

③ 국가지명위원회, 시·도 지명위원회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④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도 지명위원회와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1조의2(지명의 결정) ① 시·군·구의 지명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시·도 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시·도 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는 대한민국의 영토의 경계와 관련된 지명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지명을 결정(제91조의3에 따라 재심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명결정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지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지명을 제91조의3에 따른 재심의 청구 기간이 도과된 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조에 따른 재심의 청구·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명의 결정·통보 및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지명의 고시) 법 제91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지명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정, 변경 또는 폐지된 지명
- 2. 소재지(행정구역으로 표시한다)
- 3. 위치(경도 및 위도로 표시한다) 또는 범위

제88조(시·도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시·도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1. 시·도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11명 이내로 할 것
- 2. 시·도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지사(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부시장을 말한다) 중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할 것
- 3. 시·도 지명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할 것
- 4. 시·도 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를 정할 것
- 5. 시·도 지명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제88조의2(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시·군·구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할 것
2.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할 것
3.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할 것
4.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를 정할 것
5.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제96조의3(지명결정 원칙) ① 법 제9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명결정 원칙”이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말한다.

1. 하나의 지형, 지물 또는 지역에 하나의 지명을 결정할 것
2. 해당 지역의 지리적 특성, 문화적 특성 또는 역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명을 결정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지명결정 원칙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2022-732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인공지명"이란 문화유산(절, 고궁, 서원, 산성 등), 교통시설(공항, 철도, 역사, 도로, 교량, 터널 등), 공원, 댐, 저수지, 관광지 등 인간이 만든 인공구조물에 관한 지명을 뜻한다.

제7조(기본원칙) ① 지명을 부여할 때에는 다음의 기본원칙을 따른다. 단, 둘 이상의 지명이 경쟁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가장 부합하는 지명을 존중한다.

1. 하나의 객체에 하나의 지명을 부여한다.
2. 지명은 국립국어원 고시 한글맞춤법과 표준어규정에 따라 표기한다.
3. 지역의 정체성, 역사성 및 장소의 의미 등을 반영하는 지명을 존중한다.
4. 지명 정비 과정에서는 현지 주민들의 견해를 존중한다.
5. 현지에서 전승하여 부르고 있는 지명을 존중한다.
6. 지역 실정에 부합된 지명을 존중한다.
7. 간결하고 사용에 편리한 지명을 존중한다.

② 제1항의 기본 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는 지명으로 채택하는 것을 지양한다.

1. 현대국어 사용의 관습에서 벗어난 것은 지양한다.(외국어, 잘못된 맞춤법 등)
2. 지명의 사용 근거가 부정확하거나 의심스러운 지명은 지양한다.
3. 생존 인물의 이름은 지양한다.
4. 상업화의 동기에서 비롯된 것은 지양한다.
5. 자연지형물의 요소를 이용하여 배타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지양한다.
6. 동일 지명이 가까운 거리에 혼돈을 유발할 가능성 있는 것은 지양한다.
7. 지나치게 길어서 사용자 편의에 지장을 주는 것은 지양한다.
8. 일련의 숫자를 이용해 지정하는 것은 지양한다.

붙임2

서울시 지명 결정 세부 기준

□ 지명의 정의 및 분류

○ 정 의 : 식별 가능한 정체성을 가진 특정 장소, 지형, 시설물에 부여된 명칭

구 분	정 의
자연지명	하천, 호수, 산맥, 고개 등과 같은 자연적인 지형지물의 이름을 말하며, 해양지명은 제외
인공지명	도로의 부속시설물, 댐, 저수지, 다리, 공원 , 주차장, 항만 등과 같이 공공 목적으로 만든 구조물
해양지명	자연적으로 형성된 해양·해협·만(灣)·포(浦) 및 수로 등의 이름과 초(礁)·퇴(堆)·해저협곡·해저분지·해저산·해저산맥·해령(海嶺)·해구(海溝) 등 해저지형의 이름 ※ 서울시 해당사항 없음
행정지명	「지방자치법」 제4조 및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행정구역의 이름을 말함

○ 분 류 : 대분류(자연지명, 인공지명), 중분류(9), 소분류(39)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 명	자연지명 (자연지형)	평지, 산지, 하천, 호수, 해안지명, 섬 (6)	평야, 산맥, 폭포, 호, 반도, 섬(하천) 등 (32)
	인공지명 (지물·지역)	기간시설, 사회문화시설, 문화재 (3)	수리, 교통, 거주, 여가, 관광, 종교, 유적 (7)

□ 지명 제·개정 일반원칙

일반원칙	세부내용
① 한글 사용 원칙	가능한 아름다운 우리말을 사용하고 영어는 지양
② 명확성의 원칙	어원이 불분명한 합성어(혼성), 출처가 불명확한 지명은 지양
③ 간결성의 원칙	지명은 가능한 짧게 정하여 3~4개 음절로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도 좋은 것을 채택
④ 고유명칭 우선 사용 원칙	역사성 및 상징성 등이 증명된 옛 지명은 가능한 살려서 사용
⑤ 단일지명 사용 원칙	원칙적으로 지명을 부여할 1개의 객체에는 1개의 표준 지명을 지정, 혼란 방지
⑥ 지역민의견 존중 원칙	지역주민 의견을 존중. 지역특색을 반영하면서 현지에서 널리 불리는 지명
⑦ 인명배제 원칙	지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인명 사용은 지양
⑧ 지속성의 원칙	과거부터 사용된 지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지하고 한시적으로 사용되는 지명이나 신(新) 또는 뉴(new) 등 시간이 지나면 의미가 퇴색되는 지명은 지양

□ 사업개요

- 위 치 : 종로구 송현동 48-9번지 일대
- 사업면적 : 26,813㎡
 - 공원 25,973㎡, 광장 43㎡, 도로 796㎡)
- 시설규모 : 연면적55,610㎡,
 - 지하3층(주차장, 부속시설)/지상1층(커뮤니티센터 등)
- 사업기간 : '22. 10. ~ '29. 12.

**□ 추진경위**

- '21. 12. '서울시-LH-대한항공' 3자 매매·교환 계약 체결
- '22. 10. 송현문화공원 조성 기본계획(안) 수립(시장방침 제194호)
- '23. 6. ~ 12. 재정타당성조사, 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관리계획 승인
- '24. 3. ~ 6. 공공건축심의 및 계약심의 안건상정 및 의결
- '24. 6. 도시관리계획(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고시
- '24. 12. 송현문화공원·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주요내용

- (가칭)이건희기증관 및 문화공원·주차장 입체적 통합 조성 추진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가칭)이건희기증관 '24.11.~'25.11. 공원·주차장 '24.12.~'25.12.)
- '열린송현녹지광장' 임시개방에 따른 도심 속 시민 휴식공간 제공('22.10.~착공시)

□ 향후계획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26. 상반기) 및 공사 착공('26. 하반기)